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I.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지원, 가사, 정서, 인지 지원활동)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II. 이용계약

1) 이용계약

-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III.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1) 2026년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 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 부담금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0% 부담		
	차상위 계층		6%, 9% 부담		
	일반 수급자		15% 부담		

표 2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표 3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개인 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인지 지원 활동 등을 포함한다.(급여제공 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② 1회 서비스 당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③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시 비용

- ① 동거가족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며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③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표3-시간별 급여비용 90분 이상'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⑤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3)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시 비용

- ①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 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급여를 제공(월 6일에 한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40분에 대하여는 '표3-시간별 급여비용 240분 이상'을 산정하고 24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별 급여비용 240분 이상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③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④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 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비용 관련 사항

- ① 원거리 교통비는 장기 요양 기본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제공 시간은 90분 이상으로 하고 급여 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 비용은 '표3-시간별 급여비용 90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 요양급여제공 기록지 등에 기재한다.

2.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3. 정서지원(말벗,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 ④ 급여 제공 30분 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⑤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3-시간별 급여비용 90분 이상'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IV.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권리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V.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상황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기간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
- ④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 ⑥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